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가합36370(본소), 2020가합38679(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원

담당변호사 변수인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김용희

변론 종결 2020. 9. 9.

판결 선고 2020. 10.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5,036,249/247,000,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8,962,631/104,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8. 1.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906,770,811원과 이에 대한 2019. 8. 2.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43,055,03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본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43,055,032/4,694,659,12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130,780,10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2,53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8. 10.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8. 25. 원고와 혼인하여 1남 3녀(피고, D, E, F)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9. 11.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자녀들과 G교회에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부동산과 유증 내역,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서울 용산구 H 토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4,274,172,000원
2	서울 용산구 I 토지	피고 2019. 3. 27. J1) 피고의 처 J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14,874,000원
3	서울 용산구 K 토지	피고 2019. 3. 27. J	493,038,000원
4	서울 용산구 H, I 주택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69,487,120원
5	서울 서초구 L, 1층 M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247,000,000원
6	서울 서초구 L 지층 N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피고	104,000,000원
7	서울 강동구 O, P호	D	164,000,000원
8	서울 강동구 O, Q호	D	164,000,000원
9	서울 강동구 O, M호	D	156,000,000원
10	서울 강동구 O 지하층 R호	D	110,000,000원
11	서울 강동구 S 지하층 T호	D	102,000,000원
12	서울 강동구 S 지하층 U호	D	102,000,000원
13	서울 강동구 O, V호	E	139,000,000원
14	서울 강동구 O, W호	E	139,000,000원
15	서울 강동구 O, X호	E	133,000,000원
16	서울 강동구 O 지하층 Y호	E	43,341,740원
16-1	서울 강동구 O 지하층 Y호 부속토지	E	241,569,900원
17	서울 서초구 L 지층 Z호	E	168,000,000원
18	서울 서초구 L, W호	E	160,000,000원
19	서울 강동구 O, AA호	F	156,000,000원
20	서울 강동구 O, AB호	F	156,000,000원
21	서울 강동구 O, AC호	F	149,000,000원
22	서울 서초구 L, Q호	F	260,000,000원
23	서울 서초구 L, X호	F	152,000,000원
24	서울 강동구 S, M호	F	140,000,000원
25	서울 강동구 S, V호	G교회	140,000,000원
합계	8,477,482,760원		

위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 2019. 12. 24.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각 상속인이 상속한 부동산과 예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용산구 AD 토지	피고 지분 → 2019. 3. 27. AE2) 피고의 2/11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 AE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6,460,000원
2	서울 용산구 AF 토지	피고 지분 → 2019. 3. 27. AE	2,646,000원
3	서울 용산구 AG 토지	피고 지분 → 2019. 3. 27. AE	119,952,000원
4	서울 용산구 H, AD 건물	피고 지분 → 2019. 3. 27. AH3) 피고의 2/11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 AH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636,160원
합계	원고 42,189,316원 피고, D, E, F 각 28,126,211원	154,694,160원	

1	AI은행 원화로 AJ	원고 11,033,044원 D, E, F 각 4,104,124원	23,345,416원
2	AI은행 원화로 AK	원고 1,174,159원 D, E, F 각 436,762원	2,484,445원
3	AI은행 AL	원고 141,780원 D, E, F 각 52,739원	299,997원
4	AI은행 AM	원고 23,630,000원 D, E, F 각 8,789,999원	49,999,997원
5	AI은행 AN	원고 3,274원 D, E, F 각 1,217원	6,925원
합계	원고 35,982,257원 D, E, F 각 13,384,841원	76,136,780원	

라. 망인은 사망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29,300,000원을 부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25. 망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16,407,340원과 지방소득세 1,640,730원 합계 18,048,07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27,608,3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5호증,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4,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AO의 부동산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재산 대부분이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유증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가 이를 주도하였는데도 마치 원고가 유증에서 배제된 것처럼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유류분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위 1의 나.항,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상속재산은

8,708,313,700원(=8,477,482,760+154,694,160+76,136,780)이고,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상속채무액은 247,348,07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29,300,000원 + 종합소득세 등 18,048,070원)이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8,460,965,630원(= 8,708,313,700 - 247,348,070)이 된다.

마.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B)과 유류분액(A×B)

1) 유류분 비율(B) 망인이 2018. 10. 17.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가 3/11 비율로,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각 2/11비율로 법정상속하였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3/22, 피고, D, E, F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1이다.

2) 유류분액(A×B)은 다음과 같다.

원고	3/22	1,153,768,040원 (=8,460,965,630×3/224)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1/11	769,178,693원 (=8,460,965,630×1/11)
D	1/11	769,178,693원 (=8,460,965,630×1/11)
E	1/11	769,178,693원 (=8,460,965,630×1/11)
F	1/11	769,178,693원 (=8,460,965,630×1/11)

바.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분액(D)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수유액),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은 다음과 같고, 상속채무는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계산한 순상속분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0원5) 피고는, 원고가 망인 생전에 서울 광진구 AP, 2층 다세대주택을 증여받았고, G교회에 대한 서울 강동구 S, V호 유증 효력이 원고 사망 후에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유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P 다세대주택은 원고가 1991.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S 빌라를 유증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78,171,573원	67,458,564원	10,713,009원
피고	5,502,571,120원	28,126,211원	44,972,376원	-16,846,165원
D	798,000,000원	41,511,052원	44,972,376원	-3,461,324원
E	1,023,911,640원	41,511,052원	44,972,376원	-3,461,324원
F	1,013,000,000원	41,511,052원	44,972,376원	-3,461,324원
G교회	140,000,000원			
합계	8,477,482,760원	230,830,940원	247,348,068원	

사. 유류분 부족액(A×B-C-D)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피고 등 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 제3자인 G교회의 유류분 초과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1,153,768,040원	0원	10,713,009원	1,143,055,031원
피고	769,178,693원	5,502,571,120원	-16,846,165원	-4,716,546,262원
D	769,178,693원	798,000,000원	-3,461,324원	-25,359,983원
E	769,178,693원	1,023,911,640원	-3,461,324원	-251,271,623원

원고	1,153,768,040원	0원	10,713,009원	1,143,055,031원
F	769,178,693원	1,013,000,000원	-3,461,324원	-240,359,983원
G교회		140,000,000원		-140,000,000원
합계	8,477,482,760원	유류분 초과액 합계 5,373,537,851원		

한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1,003,300,261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143,055,031원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4,716,546,262원 / 유류분 초과액 합계 5,373,537,851원)이 된다.

아.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범위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액반환)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고,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원물반환, 가액반환) 가)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

원고는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증받은 위 각 부동산 원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물반환을 할 때에 위 각 부동산별 분담비율, 분담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47,000,000/5,502,571,120	45,036,249원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04,000,000/5,502,571,120	18,962,631원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5,036,249/247,000,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8,962,631/104,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1.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 후 제3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으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2020. 9. 8.자

준비서면). 따라서 위 부동산은 그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주택으로 피고가 거주하고 있고, 그 대지가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② 서울 용산구 I 토지인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② 서울 용산구 I 토지는 이미 J에게 처분되어, 그 대지 ①, ②가 모두 가액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가액으로 반환함이 타당하다.

라) 가액반환 부분

유류분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수유재산 중 가액반환할 부분과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용산구 H 토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6,590,560,000원
2	서울 용산구 I 토지	485,520,000원
3	서울 용산구 K 토지	760,240,000원
4	서울 용산구 H, I 주택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60,521,040원
합계	7,896,841,040원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반환으로 지급할 돈은 1,439,854,661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의 부담액 1,003,300,261원 × 위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시 시가 합계 7,896,841,040원 / 피고의 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5,502,571,120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의 부담액 1,003,300,261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지급할 돈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의 부담액'에서 '피고가 원물반환하는 부분의 피고의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939,301,381원(=1,003,300,261-45,036,249-18,962,631)이 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5,036,249/247,000,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8,962,631/104,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1.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939,301,3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27,608,370원과 망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18,048,0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32,530,570원[= 27,608,370원 + 망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중에서 원고의 부담부분 4,922,200원(=18,048,070×3/11)]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32,530,570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 청구 중 가액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 27,608,370원을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원고의 상속세 27,608,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18,048,070원을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이 부담하는 18,048,070원의 채무는 원고와 피고 등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등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피고가 18,048,070원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비율 3/11에 상응하는 4,922,200원(=18,048,070×3/11)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한 날인 2019. 4. 2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의 자.항에서 본 바와 같이 939,301,381원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2,530,570원(=27,608,370+4,922,200)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반소장으로 자신이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과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가액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반소장이 2020. 9. 3.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유류분채권은 망인이 사망한 2018. 10. 17.에 발생하였고, 원고의 유류분채권과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세금을 납부한 2019. 4. 25.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9. 4. 25.에 32,530,57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가 가액반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충당되고 남은 906,770,811원(=939,301,381-32,530,57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8.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최지영

판사김주영

별지

- 1) 피고의 처 J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의 2/11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 AE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의 2/11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 AH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강동구 S, V호 유증 효력이 원고 사망 후에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유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P 다세대주택은 원고가 1991.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S 빌라를 유증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개별 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 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의 합계

7)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의 분담액 1,003,300,261원 × 분담비율

8)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20. 5. 18.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다음과 같고, 변론종결시 시가도 위 금액과 같다고 추인할 수 있다.